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직인생략

우06704 / 서울 서초구 방배로10길 10-14 3층 / 전화:02) 732-0231-5 / 팩스:02)732-0236

문서번호 서중법 제 216 호

시행일자 2024. 4. 17.

수 신 김진석 회원님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 시	. . :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귀 회원께서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불임과 같은 회신이 있으므로 이를 송부합니다.

- 불임. 1. 대한법무사협회 공문(대법협2024-00220, 2024. 4.16.)
2. 질의서(2024. 1.11.) 사본 1부. 끝.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법원행정처

수신자 대한법무사협회

경 유

제 목 회계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결의방법에 대한 질의

1. 사법등기심의관 - 346(2024. 1. 18.)호로 접수된 귀 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협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총회의 정족수인 결의방법(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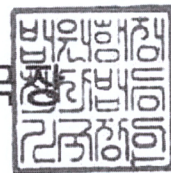
3. 회계법인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고(공인회계사법 23조),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의방법에 따릅니다(공인회계사법 40조, 상법 574조).

이 경우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관상 이사 인적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기재사항의 변경이므로 반드시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회계사법 40조, 상법 584호, 585호).

4. 따라서 회계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법률(공인회계사법 40조, 상법 574조)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선임을 위한 결의방법을 따르면 충분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법원사무관

윤상희

심의관

이동기

국장

조영

협조자

시행 사법등기심의관-1930 (2024. 4. 9.)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967)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879

/전송 02-599-2743

/jh58@scourt.go.kr

공개